

# 한국 과학교육 학회 1985년도 사업보고

1. 총회 1984. 12. 8 한국교육개발원  
경과보고, 회장선거, 사업논의, 과학교육박사학위자 기념증 전달 및 만찬

2. 임원회 1985. 09. 11월 4회

3. 연구모임

'84. 12. 21 관제술의 과학학습의 사후 효과 등 4명 발표

'85. 01. 21 미국의 국가적인 과학학력 평가 과정

활화부 지원하여 Trowbridge 교수 강연 (2.18 ~ 2.22까지 체류  
각종 활동)

'85. 01. 21 과학교육 연구의 영역과 방법

'85. 01. 22 과학교육 평가와 실태 분석

영국문화원 지원아래 Black 교수 강연 (0.17 ~ 0.22까지 체류 활동) ×

문교부, 과학기술진흥재단, 시청각사, 금성출판사 지원

'85. 11. 10 인천에서 초등 과학교육의 발전 연구모임

4. "한국 과학교육 학회지" 제 IV권 100페이지 300부 5월 발행 배포

5. "과학교육소식" 발간, 1985. 09. 11, 12월

6. 학회지 "투고 규정" 마련 ('85년 11월 과학교육 소식에 게재)

7. 학회 종신 회원제 5만원 결정 85년 12월 말까지 20명 (100만원 저급)

8. "과학교육 연구 기금" 설정 (회비 70만원 저급)

## 한국 과학교육 학회 1986년도 사업(안)

1. 총회

2월 1986 '85년도 사업 및 예산보고, 회칙 개정, '86년도 사업 및 예산

3월 1986 '86년도 사업 및 예산보고, 임원개선, '87년도 사업 및 예산

2. 임원회 1986. 03. 09. 10. 11. (6회)

3. 연구모임

1. 9 "국가의 위험" 전후의 미국 학교 과학교육과 과학교사 교육  
Dr. Roy Harsh (Northern Iowa 대학 교수)

2월 1986 과학교육 국제활동 보고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  
한국 과학 교육의 이념과 목표 설정

4월 1986 한국 과학교육의 문제 분석과 개선 과제  
11월 1986 한국 과학교육의 장 단기 진흥방안

5. "한국 과학교육 학회지" 제 V권 100페이지 300부 발행

6. "과학교육소식" 1986. 03. 09. 10. 11. 6회 발행

7. "과학교육총여집" 발간 (출판사 지원)

8. 학회 회원 주소록 작성 및 배포

9. 회원 300명, 종신 회원 100명 돌파

10.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입회 (4월)

11. "과학교육 연구 기금" 500만원 확보

이 시기 → 문화 Rule

친목 - 친구끼리

# 한국 과학 교육 학회 회칙(안)

(VI)

86.2.25

제 1조 본 회는 한국 과학교육 학회(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약칭 KARSE)라 칭한다.

제 2조 본 학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 3조 본 학회는 과학교육의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통하여 과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다음 사업을 한다.

1. 과학교육의 학술적 회합 개최
2. 과학교육의 학술지와 교육자료의 발행
3. 과학교육의 특수 연구과제 수행
4. 과학교육관계 각종 학회와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촉진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 4조 본 학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및 찬조회원으로 구성한다.

1. 일반회원은 본 회의 목적을 찬동하고 입회원서와 입회금 및 당해년도 ~~되는~~ ~~총회~~ 회비를 납부한 자이다.

2. 명예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관계된 특별한 업적이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찬조회원은 본 회의 목적을 찬동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로 간사회의 실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조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다수, 감사 2명, 간사약간명을 두고 그 일기는 2년으로 한다. ~~3년 2~~

1.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임명한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이 선출하며 학회의 중요 사항을 다룬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학회의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보고 한다.

6. 간사는 회장이 소집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총무, 편집, 사업, 설외, 재무, 연락등의 일무를 분담한다.

제 6조 본 학회는 총회, 이사회, 간사회를 통해 운영한다.

1. 총회는 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며 전년도 사업결과의 결산 신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 기타 중요 사항을 다룬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어 회장이 년 2회 이상 소집하여 필요한 의안을 다룬다.

3. 간사회는 회장, 부회장, 간사로 구성되어 필요에 의하여 회합하여 사업 활동을 집행한다.

제 7조 본 학회의 경비는 입회비,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그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8조 본 학회는 지역별 지부의 교육기능 결과를 들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 처리한다.

제 9조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본 학회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7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80년 4월 25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986년도 예산 (안)

수입	입회비	59000원 × 150명	7509000
	년회비	59000원 × 200명	190009000
	기타	이월금, 이자 등	1109000
		계	19809000
지출	학회지	100쪽 300부	8009000
	소식발간	100000 × 0회	0009000
	총회	200000 × 2회	4009000
	입원회	100000 × 0회	0009000
	연구모임	1000000 × 5회	50009000
	용여집 발간		10009000
	주소록 작성		20009000
	사무용품 및 우송비 기타		19809000
		계	

\* 특별회계 \*

종신회비	500000 × 50명	= 4900000000
연구기금	후원 모금	493000000
	계	4930000000

(연구모임에 특별 회부 지원과 비용은 별도 처리할 것임)

현재 저금

종신회비	500000 × 2명	= 190000000
연구기금		7009000
	계	197009000